

		시 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562	주무관	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결재일자	2013.4.29.	안소영	박영숙	박유미	04/29 김창보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2013년도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 계획(안)

2013. 4.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사건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 (응급학과전문의 응급구조사 등) 무 <input type="checkbox"/>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보건복지부(국비지원))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방재난본부)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자치구보건소) 무 <input type="checkbox"/>

2013년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 계획(안)

- 국내외 대규모 재난(재해) 및 대량환자 발생사고 등에 대비하여
- 재난의료지원단 출동 및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훈련 등 응급 의료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장 (긴급구조)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
- 2013년 응급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정책과-8174호)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내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대설 등에 따른 자연재해 및 화재, 건물붕괴, 폭발 등의 인위적 사고 발생이 빈번
- 우리시는 인구밀집 지역으로써 사고 발생 시 대량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서울의 교통난으로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재난 발생 시 의료지원의 반응은 지자체 보건소, 소방구급대, 경찰, 중앙,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역할과 권한이 혼재되어 각 기관별 협력이 중요

○ 추진방향

- 보건소 및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지역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운영
 - 재난 초기에 1시간 이내로 현장응급진료 등을 담당하도록 조직화하여 교육, 훈련 등의 집중실시로 비상대응 체제 강화
- 재난의료지원팀 전문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의료 지원 역량 함양
- 재난재해 발생대비 동원 의료자원, 인력, 장비의 지속적인 관리
-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으로 신속한 응급의료 네트워킹 및 협조체계 구축

II 2012년 추진실적

1. 서울형 재난의료지원단(S-DMAT) 구성 : 82팀 413명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총괄 3명 (단장1명 외 2명)
- 25개구 자치구보건소 25팀 1144명
- 권역응급의료센터 2팀 28명
- 지역응급의료센터 28팀 131명
- 지역응급의료기관 23팀 89명
- 기타의료기관 4팀 18명

※(구성기준)

- 보건소 : 5명 (의사1명, 간호사2명, 약사 1명, 행정요원 또는 운전요원1명)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 5명 (의사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1명, 운전요원 1명)
-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 4명 (의사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또는 운전요원 1명)

2. 지역단위 S-DMAT(서울 재난의료지원팀) 사업

1) 국가재난응급의료교육

- 대 상 : 자치구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종로구 송정희 외 25명 이수)
- 일 시 : 2013.1.7~1.8 (1박2일 진행)
- 기 관 : 재단법인 응급의학 연구재단

- 내용 : 재난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이론 교육 및 실습하여 재난 대비 의식 고취

2)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용 Go-bag 구입

-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DMAT 출동 Go-bag을 구비함으로써, 재난 시 출동태세 확립

3.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 4회 366명

구 분	1차 훈련	2차 훈련	3차 훈련	4차 훈련
훈련주관	종로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협 력	중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일 시	2013.6.8	2012.8.4	2012.10.12	2012.10.12
장 소	종로구 사직공원	덕성여대 운동장	강동구보건소 광장	대림3동 유수지
훈련내용 (시나리오)	종로도서관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로 대량 사상자 발생	덕성여대 약학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한 대량 사상자 발생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발생으로 건물 붕괴 등 대량사상자 발생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발생으로 건물 붕괴 등 대량 사상자 발생
총 인원	95명	110명	81명	80명
참가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서울백병원 제일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소화아동병원 을지대학교 종로구 경찰서 종로구 소방서	서울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한일병원 대한병원 을지대학교 도봉구 경찰서 도봉구 소방서	서울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양대병원 혜민병원 남서울대학교 강동구 경찰서 강동구 소방서	서울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 메디힐병원 부민병원 한림대한강성삼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성애병원 영등포구 경찰서 영등포구 소방서

Ⅲ

2013년도 세부추진계획

1 지역단위 DMAT¹⁾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5개 보건소 재난의료팀 81팀 445명
- 사업기간 : 2013.4. ~ 12.
- 추진방법 :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추진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추진)
- 추진내용 : 국가 재난난응급의료 교육 등
- 사업예산 : 38,000 천원 (국비:시비=70%:30%)

2)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S-DMAT) 정비

- 총81팀 445명 [붙임 1]
 - 市 보건의료정책과(총괄) 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부단장 의료관리팀장 등 3명
 - 25개구 자치구보건소 25팀 168명
 - 권역응급의료센터 2팀 20명
 - 지역응급의료센터 29팀 141명
 - 지역응급의료기관 21팀 99명
 - 기타의료기관 3팀 14명

3) 재난의료지원 GO-bag 지원

- 기 간 : 2013.6월~7월
- 대 상 : 25개 보건소
- 지원내용
 - 자치구당 2~3개의 GO-bag 구매 지원(보건소당 3,280천원 교부)
 -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DMAT 출동 Go-bag을 구비함으로써, 재난 시 출동대세 확립 ※ 2012년말 현재 서울시 총 75개 보유(보건소당 3개)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의사용, 구조사용, 행정용 구비
- 사업예산 : 82,000 천원(시비 100%)

1)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 DMAT Go-bag(의사용) 사례

품명	규격	수량	품명	규격	수량
Elastic Bandage	2"	15	Oxygen Line	.	2
Sterile Dressing Gauze	4"	15	Ambu Bag	소아,성인	2
Cotton Balls	6"	1	Endotracheal Tube	4,5,6,7,8	7
D-P set	4X4, 5X9	5	Stylet	.	2
Surgical Glove	S,M,L	6	Criothyroidotomy kit	.	1
3M TAPE	2"	1	Thoracostomy kit	.	1
면 TAPE	7.5X330cm	1	Burn kit	.	1
Scissors	.	1	IR Normal Saline	1L	
Hand Sanitizer	.	1	IV Normal Saline	1L	
Pen light	.	1	IV Cathether	18G	
Triage Tag	.	10	IV Set	.	
Medical Record Sheets	.	10	Syringe	10cc	
Stethoscope	.	1	Alcohol Sponge	4X4	1
혈압기	.		Cervial Collar	S,M	
Thermometer	.		Pelvic Sling	.	
PPE	.	1	MAST	.	
Nasopharyngeal airway	7, 7.5	4	O ₂ Tank	.	
Oropharyngeal airway	53,86,96mm	6	Defibrillator(AED)	.	
Facial Mask	소아,성인	5	MDI	.	
Laryngoscope	소아,성인	3			

2 응급의료기관 등 TRS²⁾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3.3.1 ~ 2014.2.28
- 추진내용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통화서비스를 제공

※ 2012.12월 현재 TRS 시스템 현황

소계	관제시스템	단말기	보조중계기	비고
371	1	311	59	2009년~2012년 구축

- 추진방법 : 통신업체와 위탁 협약 후 추진(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위탁)
- 추진기관 : 주식회사 엠지티
- 사업예산 : 136,496 천원 (국비:시비=70%:30%)

2) TRS(Trunked Radio system) :무선통신단말기 시스템

3 대량재해 대비 집체훈련

○ 훈련목적

- 자치구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에 속한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및 소방공무원 등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집체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재난 대비능력을 향상
- 재난응급의료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예방전략, 준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재난응급의료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

○ 훈련기간 : 2013. 5월~11월

○ 훈련대상 : 140명 (재난의료지원단 의사, 간호사, 구조사, 행정요원 등)

○ 추진방법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약 운영

※협약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훈련내용

- 재난유형 및 재난응급의료 기술훈련, 각종 장비사용
- 대중집회 재난응급 의료대응 및 재난대비, 도상 및 시뮬레이션 훈련 등

○ 사업예산 : 37,500천원(시비 100%)

4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 훈련목적

- 재난대비 등 시나리오에 의한 사상자 발생에 따른 실제 모의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종합훈련을 통한 현장응급의료소 기능강화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대한 이론 및 훈련 병행

○ 훈련기간 : 2013. 5월~1월(연 3회 4개조)

○ 훈련대상 : 9개 자치구 900여명

- 주관기관 : 일정별 훈련주관 자치구 보건소(권역응급의료센터협력)
- 참여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 훈련진행 : 25개 자치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 3개씩 묶어 실시

연번	조	2013년도 훈련			2014년도 훈련예정		비고
		일정	주관	참여 보건소	주관	참여 보건소	
1회	1조	6월	마포	은평, 서대문	중구	용산, 종로	동시다발 재난대비 훈련
2회	2조	7월	성북	중랑, 동대문	강북	노원, 도봉	
3회	3조	9월	송파	강남, 서초, 관악	광진	성동, 강동	
	4조	9월	구로	금천, 동작	강서	양천, 영등포	

※ 구체적인 훈련일자는 권역센터 및 관할소방서 등과 협의결정

○ 추진방법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약에 의거 훈련실시

※협약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훈련 등

○ 훈련 실시 중점사항

- 재난의료지원단(DMAT) 출동 및 중증도 분류, 적절병원 이송훈련
- 테러 등 시나리오에 의한 사상자 발생에 따른 실제 모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종합훈련
- 자치구를 권역별 4개조로 편성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권역별 주관 보건소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훈련실시
- 전반적인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이론교육과 훈련을 병행 실시
- 관내 긴급 구조구난 기관 및 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원활한 협조 및 각 기관의 역할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합동훈련 강화
- 동시다발 대량재해에 대비하여 3회차 2개조(3조·4조) 동일일시에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실시

○ 훈련 참관 및 평가

- 훈련 참관 :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응급의료기관·자치구 등
- 훈련 평가 : 서울시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병원)

○ 사업예산 : 33,000천원(시비 100%)

○ 훈련 참여기관의 역할 및 협조사항

기관명	역 할	협 조 사 항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훈련 소요경비 지원 ◦훈련참관 및 당일 훈련평가 	
자치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응급의료소 지휘(주관구 보건소장)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계획수립, 훈련방법, 동원, 홍보 등) ※ 주관구에서 관련기관(소방서, 권역센터 등)간 역할분담 등 사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일시, 장소 선정 등 훈련공간사용에 따른 관련부서 사전협의 ◦훈련에 역할 분담 및 지원사항 결정 ◦행정요원 참여(환자접수, 기록 등) ◦현장지휘소 설치 및 주차공간 확보 ◦훈련에 필요한 물품 준비 등
응급의료 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응급의료 통신소 운영 ◦응급의료정보의 수집 ◦정보제공 및 환자의 분산배치 ◦분산 배치된 환자의 신원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소 운영에 따른 통신장비 지원 ◦응급구조사 지원 등
권역응급 의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응급의료소 출동 및 설치 ◦응급의료진의 소집 ◦응급환자의 진료 및 중증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응급, 비응급, 지연, 환자치료 등 ◦훈련 종합평가(문제점, 방안강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 시나리오 작성, 교육, 인력 등 현장응급의료소 훈련 제반사항 지원 ◦이동응급의료세트 지원 ◦의료인력 및 모의환자 지원
응급의료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실 및 진료공간 확보 ◦의료진 대기 및 의료장비 등 가용준비 ◦1339에 응급의료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 수술실, 수술실장비, 환자 경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및 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 구급차 및 진료장비 ◦행정요원 참여(환자접수, 기록 등)
소방재난 본 부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지휘(통제)부 운영 ◦재해진압 및 구조작업, 구급차동원, 후송 ※ 현장응급의료소장과 역할 등 사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구급) 차량지원 ◦구조인력 및 구조물품 등 장비지원
경 찰 청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지역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 및 안전지역 경찰저지선 선정 ◦재해지역으로 진입로, 이송로, 피난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인력
협조기관	◦장소 선정 및 훈련관련 각종 협의	◦훈련장소 및 인근지역 사용 협조

○ 행정사항

- 주관 자치구 보건소(마포, 성북, 송파, 구로)는 **훈련실시 계획수립 제출 : 훈련일 30일전까지**
- 주관 보건소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방서와 훈련일시 및 역할분담 등 사전협의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취지에 맞게 『의료대응 활동 시나리오』에 따라 **주관 보건소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관련기관(권역센터·소방서)과 훈련일시, 역할분담 등 사전협의
- 훈련관련 홍보실시 - 훈련주관 자치구(자체 홍보방안 강구)
- 9월에는 2개조(3조 · 4조)가 동시에 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협조 필요시 중앙응급의료센터 보유 이동응급의료세트 사용 협조요청.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훈련실시 결과 종합평가한 후 및 문제점 등 보완사항 제출(평가표 사전 작성 통보)

IV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326,966천원 (국비 121,574천원 시비 205,392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세부사업내용	예산액(천원)	비고(천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보건소지역단위 DMAT운영	38,000	국비 26,000 시비 12,000
		재난의료지원 Go bag구매	82,000	전액시비
	민간자본보조	응급의료기관 TRS시스템 구축	136,496	국비 95,574 시비 40,922
	민간경상보조	대량재해 집체훈련	37,500	전액시비
		현장응급의료소훈련	33,000	전액시비
총	326,966천원			

V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응급의료계획 수립												
재난의료 계획수립												
재난의료지원단 재정비												
DMAT GObag 구매												
대량재해 집체훈련												
현장응급의료소 훈련												
실적 보고												
정산												
사업평가												

- 붙임 1. 2013년도 S-DMAT(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명단 1부
2.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대응체계 1부. 끝.

[붙임 2]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장(긴급구조)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
-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 지원 지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01호,2013.3.21)

비상진료대응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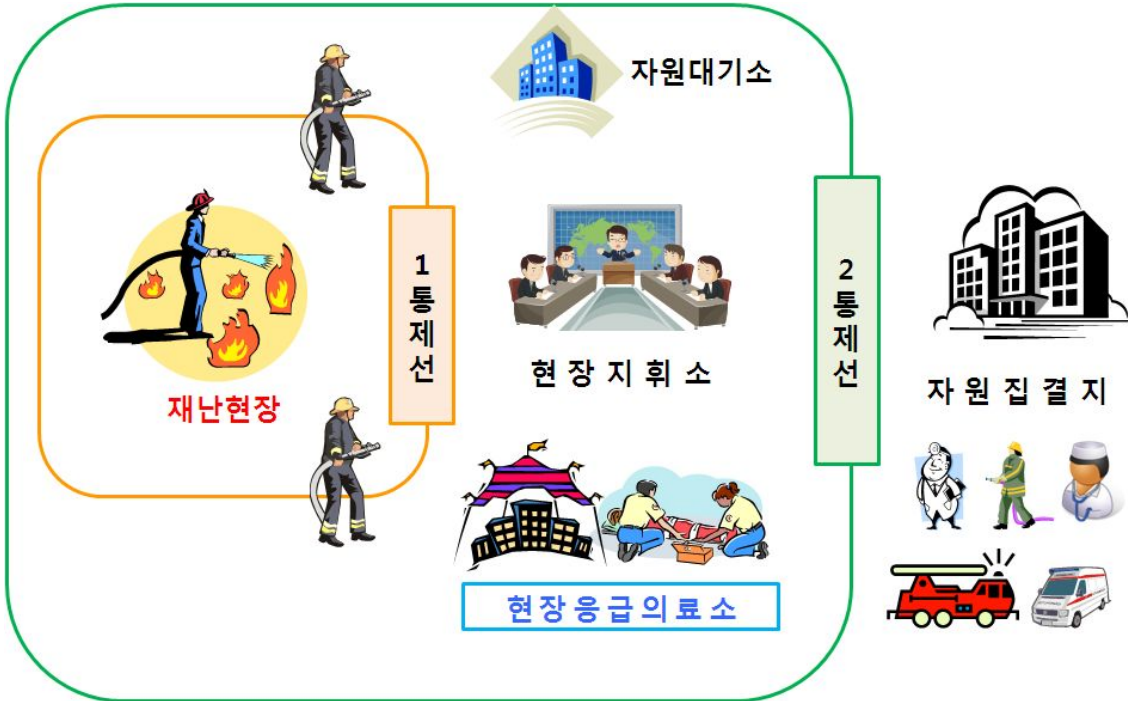
- 응급의료기관 재난의료지원단 출동 명령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체계 유지
 -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 보건소에 상황 전파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간 협조체계 유지
 - 인근 시,군,구간 부상자 이송 및 치료 조정
- 무선통신체계 유지
 -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무선통신 체계 유지

재난의료지원단 출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재난의료지원단 출동 명령을 응급의료기관에 전파
 - 재난의료지원단은 출동 명령 즉시 해당 재난 지역에 출동하여 응급의료 임무 수행
 - 현장 상황의 보고
 - 응급의료 지원에 따른 의사결정 요청 및 응대
 - 기타 관련 사항 보고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사고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 감독

-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5항에 의거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된 지역관할 보건소장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방재청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시,도), 소방서장(시,군,구)

- 재난 현장과 현장지휘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되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통신이 가능하며, 제2의 사고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환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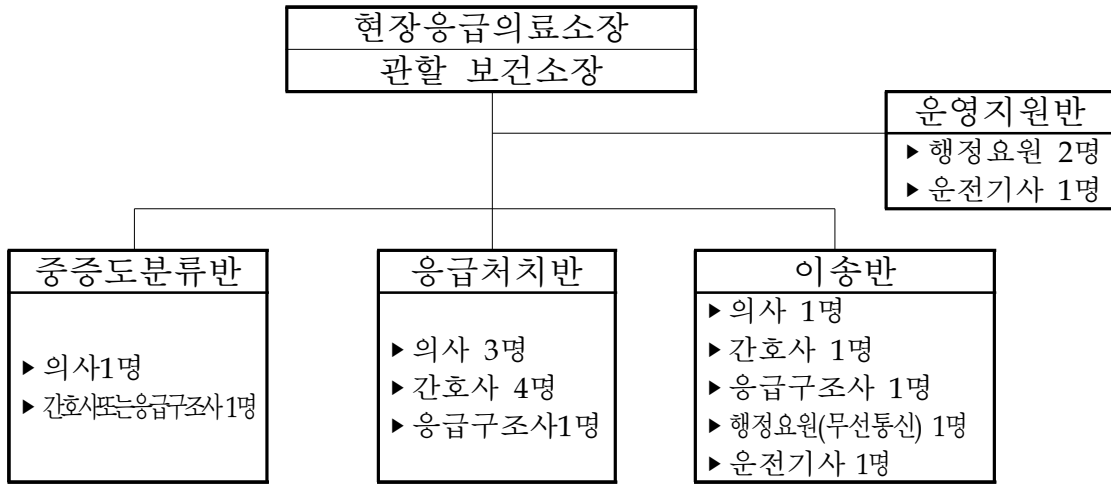
- 1통제선 이내 : 재난 현장 (의료진은 진입 불가)
- 현장지휘소 : 긴급구조 활동 총괄 지휘통제
- **현장응급의료소** : 재난현장과 현장지휘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 사이)
- 제2통제선 : 현장 출입 및 교통통제, 오염통제
- 자원집결지 : 긴급구조유관기관, 단체지원 자원집결
- 자원대기소 : 자원집결지로부터 현장투입을 위한 지원 자원 및 교대조 대기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응급의료소 내 응급의료지원반의 구성, 운영**

-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은 사고종류, 규모, 인명피해 등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반(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업무 수행

- 각 반에 반장을 임명하고 반별업무를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및 운영지원반(의료자원지원반)의 4개 반을 기본조직으로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을 확대



○ 응급의료지원 업무 흐름도



□ 각 반의 임무

반 명	임 무												
중증도 분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 분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의 생사여부와 소생 가능성 판정 - 모든 사상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평가하여 중증도 분류 ◦ 중증도 분류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e0b2;">긴급환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e0b2;">적색</td> <td>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응급환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황색</td> <td>수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비응급환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녹색</td> <td>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지연환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흑색</td> <td>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td> </tr> </table> ◦ 중증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이 있는 환자는 중증도 분류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 모두 기록 - 처리결과에 따라 귀가 또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 -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중증도 분류표 부착 	긴급환자	적색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	응급환자	황색	수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비응급환자	녹색	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	지연환자	흑색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긴급환자	적색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											
응급환자	황색	수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비응급환자	녹색	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											
지연환자	흑색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응 급 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구역(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지연환자) 구분 및 팀별 표지판 설치 ◦ 환자의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각 팀별 응급처치 실시 ◦ 현장응급의료소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현황 보고 ◦ 다른 반들과 무선통신체계 유지 												
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 분류표의 이송기록 부문을 처치기록지에 이송원칙의 순서대로 이송 (긴급→응급→비응급→지연환자) ◦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인근의료기관의 병상정보 및 진료정보 판단하여 이송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기관 배정 ◦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이용 이송기록 파악 및 기록 유지 ◦ 다른 반들과 무선통신체계 유지 ◦ 이송할 의료기관에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알리고 응급처치 내용이 기록된 중증도 분류표가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착여부 확인 												
운영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관리 업무 지원-임시 영안소 업무 지원 ◦ 다른 반들과 무선통신체계 유지 												
구조구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 발생상황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통보 및 공조유지 ◦ 재해 진압 및 구조작업, 구급차동원, 후송 ◦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현장응급의료소로 신속 인계 												
경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나 사망자 이송로 진·출입로 확보 조치 및 현장응급 의료소 주변 치안유지 ◦ 현장응급의료소장이 통제관을 통하여 요청하는 사항 												

□ 지원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만으로 응급환자의 진료를 원활하게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 비상진료대응반에 해당 상황의 보고와 현장응급의료지원을 요청
- 서울시 비상진료대응반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는 등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며, 그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 상황 보고 및 지원 요청

□ 현장응급의료소 철수 및 사후조치

- 현장응급의료소의 철수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해체 지시
 - 긴급구조 활동 상황이 종료되어 더 이상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이 필요 없다고 서울시 비상진료대응반에서 판단한 경우
- 철수 후 조치사항
 - 중앙응급의료센터, 서울시에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결과 보고
 - 1주일 이내에 의료장비와 소모품, 약물 및 기타 장비소독 점검 후 고장이나 부족한 장비를 보수, 보충